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6. 10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1. 5. 27. 이홍민 의원 외 5명
나. 회부일자 : 2021. 5. 27.
다. 상정일자 :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(2021. 6. 10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이홍민 의원

가. 제안이유

교육과 직업에 있어서의 성취 부족, 이혼·양육포기로 인한 가정해체 등으로 보호관찰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시민의 피해 예방 및 사회적 비용 절감, 지역사회의 불안감 해소와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보호관찰 대상자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

나. 주요내용

1)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(안 제1조 ~ 안 제2조)

2)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
3)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시책개발 및 홍보와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근거(안 제4조)

4) 사업추진을 위한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지원(안 제5조)

5) 보호관찰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, 비밀준수, 포상근거 등(안 제6조 ~ 제9조)

3. 검토보고 (조광현 전문위원)

○ 본 제정조례안은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.

○ 조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- 안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자를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마포구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대상자 등으로 정의
- 안 제3조는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
- 안 제4조는 추진사업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,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,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
-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지원 근거 마련 및 보호관찰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

○ 검토의견

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한 보호관찰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

보호관찰 대상자가 원활하게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등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내 범죄 예방 및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내용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(수정안 붙임)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 타 : 없 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수정안

의 안 번 호	21-63관련

발의년월일 : 2021. 5. .
발 의 자 : 이홍민 외 1명

1. 수정이유

제1조(목적) 중 단어 일부를 문맥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가. 제1조 중 “시민”을 “주민”으로 함.

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조 중 “시민”을 “주민”으로 한다.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 주민---------- ----------.